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84 발의연월일: 2024. 10. 7.

발 의 자:김형동・박정하・우재준

서범수 · 김소희 · 권영진

한지아 · 김위상 · 조지연

서일준 · 강대식 · 박덕흠

서지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, 실험·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,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여 주고,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,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런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지원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41조 및 제42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6년 12월 31일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6년 12월 31일까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,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"2024년 12월 31일까지"를 각각 "2026년 12월 31일까지"로 한다.

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6년 12월 31일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6년 12월 31일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1조(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제41조(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) ① 「초・중등교육 대한 면제) ① -----법,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 른 학교,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 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 관 설립 · 운영에 관한 특별 법」 또는 「기업도시개발 특 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학교등"이라 한다)가 해당 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 -----2026년 12월 31일 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까지----. 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 징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

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 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 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 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 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 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 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종업원분 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에 관 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은 면제하지 아니한다. ④ (생 략)

<u>2026년 12월 31일까</u>
<u> </u>
③
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
<u>.</u>
· ④ (현행과 같음)

(5)	「사	립학교	고법」	에	따른	학
교법	인과	국기	구가	국립	대학	법인
으로	설i	립하는	는 국	'립호	마교의	설
립등	기,	합병	등기	및	국립	대학
법인	에 1	대한	국유	-재신	·이나	공
유재	산의	야면	근에	따른	년 변	경등
기에	대	해서	는 :	등록`	면허시	네를,
그호	학교이	네 대	해서	는 주	주민서	사
업소	분(지빙	세법	┙	제813	조제
1항제]1호	에 대	다라	부고	되는	세
액으	로	한정한	<u> </u> 나나)-	을 Z	남각 <u>일</u>	2024
<u>년 1</u> 2	2월 :	31일	까지	면제]한다	
6 (생	략)				
	-1) -1 -1	H -1	_1] (ا ا ا	ו או	\neg
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(한의과대학, 치과대학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)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.
- 1.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

5	
	<u>2026년 12</u>
월 31일까지	
⑥ (현행과 같음)	
7	

세의 100분의 30(감염병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 0)을, 재산세의 100분의 50 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)을 각각 경감한 다.

⑧ (생략)

제42조(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)

① 「초・중등교육법」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.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 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・ 운영에 관한 특별법, 또는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 따 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학교등"이 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숙사(「한국사학진흥재단 법」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 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)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 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

⑧ (현행과 같음)
제42조(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)
①

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취득세를 추정한다.

1. · 2. (생략)

- ②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·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입목(立木)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·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- 1. 2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20
26년 12월 31일까지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
2026년 12월 31일까지
·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현행과 같음)